「국제교육원 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1. 6. 28. 개정 판 (시행 2021. 6. 28.) → 2024. 9. 30. 개정 판 (시행 2024. 10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209/compare?from=1242&to=1569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2:18:2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운영위원회)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1. 본 위원회 위원은 원장, 부원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재무처장, 국제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20-06-08〉 2.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,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. 3.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. 4.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. 5.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	**제9조(운영위원회)** 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1. 본 위원회 위원은 대외국제처장(위원장), 국제교육원장(서기)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재무처장, 한국어교육센터장, 대학원장, 국제교육원팀장, 교수 2인, 담당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20-06-08〉 2.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, 서기는 국제교육원 부원장이 맡는다. 3. 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 중 당연직으로 한다. 4. 본 위원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한다. 5.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. ① 국제교육원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국제교육원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"위원은 원장, 부원장,"를 "위원은 대외국제처장(위원장), 국제교육원장(서기),"로 하고, "국제교육원팀장 및 총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"를 "한국어교육센터장, 대학원장, 국제교육원팀장, 교수 2인, 담당직원 1인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